

# 예산총칙

2022년도 추경 2 회

제 1 조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717,126,026	21,513,781
일반회계	621,866,055	18,655,982
특별회계	95,259,971	2,857,799
공기업특별회계	51,097,824	1,532,935
상수도사업특별회계	51,097,824	1,532,935
기타특별회계	44,162,147	1,324,864
주택사업특별회계	12,400	372
의료보호특별회계	494,499	14,835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발전사업특별회계	1,389,800	41,694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593,691	17,811
다목적댐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1,071,659	32,150
수질개선특별회계	40,600,098	1,218,003

제 2 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과 같다.

제 3 조 [채무부담행위사업] "해당없음"

제 4 조 [계속비사업조서] "불임"과 같다.

제 5 조 [이월사업조서] "해당없음"

제 6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4,154,203천원으로 한다.

제 7 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공기업특별회계 포함)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30,600,000천원으로 한다

제 8 조 지방재정법 제47조의2 제1항 단서에 따라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